

	<h1>보 도 자 료</h1> <p>제공일 : 2026년 3월 17일</p> <p>붙 임: 사진 2매, 건의문 1부.</p>	작성과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
		담당 부서	과 장 : 김성자 팀 장 : 김도형 담당자 : 최승원
		연락처	061)830-6067

## 고흥군의회, 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사는 곳에 따른 차별 없는 보훈 실현...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 및 국비 지원 강력 요구**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3월 16일에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규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한 이번 건의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역지자체 참전수당은 제주가 28만 원, 서울이 20만 원인 반면 전남은 7만 원, 전북은 4만 원에 불과하며, 기초지자체 수당을 합쳐도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고흥군의 경우 광역 7만 원과 기초 12만 원을 합해 총 19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전국으로 보면 중간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여건상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정부가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훈수당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 ▲재정능력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규대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어디에 사느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보훈은 지자체의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의무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고 합당한 예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가보훈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보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붙임

# 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책무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특히 참전용사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의 보훈수당은 그 금액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시·도별, 구·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올해 기준 243개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에서는 제주가 28만 원, 그 뒤를 이어 서울 20만 원, 울산과 대구가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전북이 가장 적은 4만 원을, 그 뒤를 이어 전남이 7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로만 보면 당진시·아산시·서산시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화천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별도의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합계액은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고흥군은 광역 7만 원, 기초 12만 원 합하여 19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국가를 위해 동일한 희생을 한 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생활

안정 수준이 현저히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훈수당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고 지급 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지급 수준은 전국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 가계 소비지출액은 일반 통계적 비교 지표일 뿐 보훈 대상자의 현실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법 차원에서 수당 결정의 구체적 원칙이 없고 최소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보훈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는 지자체별 최소 지급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동일 공헌에 대해 일정 수준 이하로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훈 수당 산정 시 물가, 건강보험 진료비 수준, 평균 생활비 등 보훈대상자 실생활 지표를 반영한 기준을 설정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정 능력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 보훈수당 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역별 인구구조, 의료비 부담 등을 감안한 보훈지수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지원과 재정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한 일관된 보훈정책 추진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보훈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의무이며, 재정 여건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이들을 잊지 않고 차별 없이 보답하는 나라,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지자체의 보훈수당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우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보훈정책의 지역별 차별 해소와 공헌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위해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방안에 앞장서라!

2026년 3월 16일

**고 흥 군 의 회 의 원 일 동**



▲고흥군의회는 3월16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